

의안번호	2206444
의 퇴 인	안호영의원
회 답 일	2024. 12. 23.
추계번호	24B586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제2항제4호 부터 제7호까지 신설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함(제2항) <u>4.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u> <u>5.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u> <u>6.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u> <u>7.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u>	의무규정
2	안 제23조제1항(농 업·농촌 공익기능 증 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위원회의 설치)	<u>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농촌 공 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함)를 둔(제1항)</u> ※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영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의결기능을 추가하는 것임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제2항제4 호부터 제7호까지 신 설(선택직접지불제도 의 시행 및 종류)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제4호) • 미대상 – 현행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제5호)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제6호)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제7호)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23조제1항(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위원회의 설치)	• 미대상 - 개정안은 현행 위원회의 명칭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참고자료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참고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 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각 직불제도 도입 및 직불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재정수반요인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참고자료 1]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선택형 직불제 개요 참고

가.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안 제21조제2항제4호 신설)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전략작물직불제도’¹⁾를 시행중이며,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지원목적)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벼 재배 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차등 지원

1) 법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 ~ ②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들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 (전략작물)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
- 예산: ('24년) 1,865억원, ('25년) 2,440억원 (~'22년까지 논활용직불)
- ※ [참고자료 1]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선택형 직불제 개요,
[참고자료 2]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개요 참고

[표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예산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공익기능증진직불 (1071-302)	2,726,884	2,870,184	2,953,622
- 전략작물직불	112,100	186,450	244,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나.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안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

- 유사 입법사례 및 제안이유²⁾에 따르면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등 쌀 생산 조정정책에 따라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판단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20년 한시적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개정안에 따른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와 유사함³⁾
 - 타작물은 벼 이외의 작물로 조사료(粗飼料)⁴⁾, 일반·꽃거름, 두류, 휴경 등이 포함될 수 있음

2) 의안번호 제2123223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략)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는 쌀이 쌀값 폭락을 반복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생산 조정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한 농민의 정책적 신뢰가 부족한 실정으므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등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3) 2018~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

[2018~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한시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2018			2019				2020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A)	이·전용(B)	집행액(C)	집행률[C/(A+B)]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136,829	67,880	49.6	150,479	△59,700	83,682	92.2	54,992	54,989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제출자료

4)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되는 사료, 청초, 건초 따위
(자료: 농촌진흥청, 농사로포털, 「농업용어사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타작물 품목군별 재배면적 및 타작물 재배 지원단가, 휴경지 지원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 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생산조정대상 농지면적}_{i,t} \times \text{지원단가}_{i,t})$
 - 이때 t 는 추계기간, i 는 타작물 품목 또는 휴경지
- 그런데 타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지 면적, 품목별 면적당 지원단가 등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다.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안 제21조제2항제6호 신설)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 즉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도입 검토중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사업에 앞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중이며, 이후 본사업 단계에서 대상 확대 검토
 - (’23년) 도입안 마련, (’24~27년) 시범사업 시행 및 프로그램 도입 기반 마련
- ※ [참고자료 1]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선택형 직불제 개요,
[참고자료 3]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개요 참고

[표 2]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공익기능증진직불 (1071-302)	2,726,884	2,870,184	2,953,622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	9,000	23,30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탄소중립직접지불제는 시범사업 후 본사업 시행 예정으로, 본사업 비용추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물량 등이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라.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안 제21조제2항제7호 신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⁵⁾는 경축순환농업을 “농업생산의 부산물(가축분뇨, 볏짚, 버섯 배지 등)을 농업생산 내부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농업 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 내 농축산업간 연계를 높여 지역 순환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농업”⁶⁾⁷⁾으로 정의

- (축산부문) 가축분뇨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환원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개선에 기여. 경종부문으로부터 쌀겨와 볏짚 등 부산물을 공급받아 사료수입을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가능
- (경종부문) 필요한 양분을 화학비료 대신 퇴액비로 공급함으로써 미생물을 활성화하여 지력 증진 등 토양개량에 기여. 이는 농약사용 감소로 이어져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가능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축순환직불제는 경축순환의 개념 정립, 경축순환으로 분류되는 활동 발굴 등을 살펴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5)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안)」, 2019. 12. 3., 41~42쪽

7) 참고로 정확균 등은 경축순환농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음

－ 경축순환농업: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여 경종농가 작물 양분으로 공급하고, 경종농가에서 발생한 농업부산물과 경종농가에서 재배한 조사료를 사료화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줄이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서로 이익을 얻는 농업

(자료: 정확균·임영아·강경수,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R8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10., 21쪽)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선택형 직불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종 류		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20년 개편 시행) ‘25년 2조 6,335억원		○ 지원목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대상농지: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등 ○ 지원대상: ①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16-’19년 기존 직불금 수령자,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천 5백만원 이상) ○ 지원단가: 진흥/비진흥 논·밭 및 면적구간에 따라 차등 <table><tr><th rowspan="2">구간 단계</th><th colspan="3">면적직불금(만원/ha)</th><th rowspan="2">소농직불금 (0.5ha 이하)</th></tr><tr><th>0.1~2ha</th><th>2~6ha</th><th>6~30ha</th></tr><tr><td>논·밭 진흥지역</td><td>215</td><td>207</td><td>198</td><td rowspan="3">130만원/가구</td></tr><tr><td>논 비진흥지역</td><td>187</td><td>179</td><td>170</td></tr><tr><td>밭 비진흥지역</td><td>150</td><td>143</td><td>136</td></tr></table>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만원/ha)			소농직불금 (0.5ha 이하)	0.1~2ha	2~6ha	6~30ha	논·밭 진흥지역	215	207	198	130만원/가구	논 비진흥지역	187	179	170	밭 비진흥지역	150	143	136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만원/ha)			소농직불금 (0.5ha 이하)																						
	0.1~2ha	2~6ha	6~30ha																							
논·밭 진흥지역	215	207	198	130만원/가구																						
논 비진흥지역	187	179	170																							
밭 비진흥지역	150	143	136																							
선택형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99~) ‘25년 319억원	○ 지원목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유기 5년, 무농약 3년) ○ 지원단가: 인증단계 및 논/밭/과수 등 구분에 따라 차등 <table><tr><th rowspan="2">인증단계</th><th rowspan="2">논(천원)</th><th colspan="2">밭(천원)</th></tr><tr><th>과수</th><th>채소·특작·기타</th></tr><tr><td>유기(5년)</td><td>950</td><td>1,400</td><td>1,300</td></tr><tr><td>무농약(3년)</td><td>750</td><td>1,200</td><td>1,100</td></tr><tr><td>유기지속(영구)</td><td>570</td><td>840</td><td>780</td></tr></table>				인증단계	논(천원)	밭(천원)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5년)	950	1,400	1,300	무농약(3년)	750	1,200	1,100	유기지속(영구)	570	840	780			
	인증단계	논(천원)	밭(천원)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5년)	950	1,400	1,300																						
무농약(3년)	750	1,200	1,100																							
유기지속(영구)	570	840	780																							
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 (‘09~) ‘25년 41억원	○ 지원목적: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지원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 받은 자 중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단가: 한우 370천원/두, 돼지 27천원/두, 육계 490원/마리, 젓소(우유) 122원/L, 계란 20원/개, 오리 630원/마리, 오리알 27원/, 산양 14,369원/마리, 산양유 261원/L																									
경관보전 직불제 (‘05~) ‘25년 168억원	○ 지원목적: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집단화된 농지(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경관작물)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헤어리베치 등 (준경관작물)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지원단가: 경관작물:170만원/ha 준경관작물:100만/ha, 준경관초지:45/ha																									

종 류		지급 기준 및 지원 단가
	전략작물 직불제 (‘23~) ‘25년 2,440억원	○ 지원목적: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차등 지원 ○ 지원대상: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단가 * (동계작물 단일재배) 1ha당 50만원(밀은 100만원), (하계작물 단일재배) 가루쌀·두류 1ha당 200만원, 하계조사료 1ha당 500만원, 옥수수·깨 100 (전략작물 이모작 재배) 동계 밀·동계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가루쌀 이모작하는 경우 1ha당 100만원 추가 지급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24~) ‘25년 233억원	○ 지원목적: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 ○ 지원대상: 기본형 직불 수령 농가 중 시범사업 예산제약,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 경영체 중심 추진 - (경종)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해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축산)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단가 * (중간 물떼기) 1ha당 15만원, (얇게 걸러대기) 1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1ha당 36.4만원, (가을갈이) 46만원/ha (저메탄사료 급여) 두당 2.5~5만원, (질소저감사료 급여) 두당 0.5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 1,800원/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제출자료

□ 최근 4년간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및 2025년도 예산

<최근 4년간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2021~2024년) 및 2025년도 예산>

(단위: 천ha, 천건,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잠정치)			2025년도 예산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대상면적	지급대상	지급액	대상면적	지급대상	예산액
기본형 직불제	1,083	1,122	22,268	1,058	1,129	21,943	1,109	1,285	23,018	1,076	1,284	23,084	1,106	1,386	26,335
－ 소농직불	146	450	5,399	144	450	5,405	153	490	5,875	163	517	6,713	190	607	8,053
－ 면적직불	937	672	16,869	914	679	16,538	956	795	17,143	913	767	16,371	916	779	18,282
선택형 직불제	143	94	819	131	96	741	169	119	1,379	—	—	—	—	—	—
－ 친환경직불 (농업+축산)	36	36	255	33	35	228	33	33 (축산 21건)	214	32	31	211	38	— (축산 119건)	360
－ 경관보전직불	14	11	91	13	11	86	11	11	85	17	12	121	22	16	160
－ 전략작물직불 (~22 논활용직불)	93	47	473	85	50	427	125	73	1,080	133	100	1,659	176	—	2,440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경중)	—	—	—	—	—	—	—	—	—	10	4	30	36	12	132

주: 2024년도 실적은 잠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논에 전략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①식량자급률의 증진, ②양곡 수급관리, ③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2조)

□ (필요성) 밀·콩 등의 작물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주곡인 쌀은 구조적 과잉 상태로 수급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요구 상존

- 자급률이 낮은 밀·콩 등은 전략적으로 생산을 확대할 필요
-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가격 하락 및 시장격리비용 재정부담 확대

□ (추진방안) 밀·콩 등 주요 작물 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활용직불*과 작부체계를 연계하여 직불금을 차등 지원

* 논활용직불제는 동계 논이모작을 지원해 농가 소득증대, 식량·사료작물 생산 확대

□ (지원단가) 50~600만원/ha

- (단작 동계) 밀 100만원/ha, 조사료·식량작물 50만원/ha
- (단작 하계) 두류·가루쌀 200만원/ha, 옥수수·깨 1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 (이모작) 동계(밀·조사료) + 하계(두류·가루쌀) 이모작 시 100만원/ha 추가 지원

□ (기대효과) 보조사업과 달리 직불을 통해 안정적인 작부체계를 구축, 벼 재배로 회귀함이 없이 쌀 적정생산 체계 유지

- 밀·콩 등 전략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수입대체 효과 도모

* 논타작물지원은 쌀 수급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이 유동적이고 벼 대체작물을 특정할 수 없어 주요 작물 자급률 제고 및 수급조절에 한계

[참고자료 3]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국비 100%)

□ 지원대상: 시범사업 단계 이후 본사업 단계에서 확대 검토

- (경종)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축산)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활동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하고 농가 수용성이 높은 저탄소 영농활동 중심 지원 후 확대

구분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만원)	물량
경종	①중간물떼기	▶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15/ha	25,710ha
	②얕게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종료 후 2~3cm 용수공급 후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4회)	16/ha	25,710ha
	③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 밑거름 투입 시 또는 추수 후 가을갈이 시 투입	36.4/ha	5,265ha
	④가을갈이	▶ 벼 수확 후 경운하여 볏짚을 갈아엎어 넣어줌	46/ha	5,000ha
축산	⑤저메탄사료 급여	▶ 관행 사료 급여 대비 메탄 발생이 최소 10% 이상 저감되는 사료 급여	2.5~5 /두	(한육우) 9만 두 (젖소) 0.9만 두
	⑥질소저감사료 급여	▶ 적정 단백질을 공급하여 잉여 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사료 급여	0.05~1/두	(한육우) 10만 두 (돼지) 38.5만 두 (산란계) 100만 수
	⑦분뇨처리방식 개선	▶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는 설비 도입 및 가동	0.18/톤	퇴비 189만 톤

※ '25년 가을갈이 및 분뇨처리방식 개선 추가

[참고자료 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⁸⁾

□ 설치 현황

명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20.5.1) 정부입법(), 의원입법(✓)		
위원회 구성일		2021. 5. 11.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설치목적		공익직불제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위 원 (정비중)	위원장 (임명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공무원 (총 6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민간위원 (위촉직)	농업인단체, 소비자 단체, 언론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위원 구성 예정		
	기 타	-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호 (해촉기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24. 9월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정책자료 > 정책분야별 자료)